##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주영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4958

발의연월일: 2024. 10. 28.

발 의 자: 김주영·강득구·강준현

박균택・박상혁・박 정

박홍배 • 이학영 • 정태호

진성준 의원(10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상시 30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근로자의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둘 이상의 중소기업 사용자 및 근로자가 납입한 부담금 등으로 공동의 기금을 조성·운영하여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중소기업은 대기업에 비해 퇴직급 지급 능력이나 안정적인 퇴직연금 운영이 어려워 근로자들이 충분한 노후 소득을 보장받지 못 하고 있음.

또한,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는 한국에서 노후 준비가 미흡한 중소기업 노동자들이 늘어나고 있어, 이들의 안정적인 노후소득 보장을 위한제도적 지원이 절실한 상황임.

이에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를 상시 50명 이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으로 확대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장하려

는 것임(안 제2조제14호 및 제23조의6제1항).

법률 제 호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4호 중 "상시 30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을 "상시 50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으로 한다.

제23조의6제1항 중 "중소기업의"를 "상시 50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중소기업의"로 한다.

####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제2조(정의)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13. (생 략)	1. ~ 13. (현행과 같음)
14.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	14
도"란 중소기업( <u>상시 30명 이</u>	<u>상시 50명 이</u>
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에 한정한다. 이하 같다) 근	
로자의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	
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둘 이	
상의 중소기업 사용자 및 근	
로자가 납입한 부담금 등으로	
공동의 기금을 조성・운영하	
여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	
는 제도를 말한다.	
15. • 16. (생 략)	15.・16. (현행과 같음)
제23조의6(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	제23조의6(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
제도의 설정) ① 중소기업의	제도의 설정) ① <u>상시 50명 이</u>
사용자는 제23조의5에 따른 중	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중소
소기업퇴직연금기금표준계약서	<u>기업의</u>
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에 관하	
여 제4조제3항 또는 제5조에	
따라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얻	
거나 의견을 들어 공단과 계약	

을 체결함으로써 중소기업퇴직	
연금기금제도를 설정할 수 있	
다.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